

목 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1
유무상증자 결정	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08월 18일

회 사 명 :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성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8

(전 화) 02 - 3218 - 6701

(홈페이지) <http://www.isdongse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양 수 창

(전 화) 02-3218-6701

유무상증자 결정

1.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5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5,533,531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75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13,500	확정예정일	2011년 09월 29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1년 09월 05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58614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1년 09월 07일		
		종료일		2011년 09월 07일		
	구주주	시작일		2011년 10월 05일		
		종료일		2011년 10월 06일		
12. 납입일		2011년 10월 13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p>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원 청약 미달에 따른 잔여주식과 단수주는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며,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모합니다.</p> <p>일반공모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대투증권(주), 인수회사인 동부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가 각각40:30:30의 비율로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p>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10월 21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년 10월 24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8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 (명)	-
참석여부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구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① 예정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 전일(2011년 08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

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text{기준주가}(18,776\text{원}) \times [1 - \text{할인율}(25\%)]$$

$$\text{▶ 예정발행가액}(13,500\text{원}) = \frac{\text{기준주가}(18,776\text{원}) \times [1 - \text{할인율}(25\%)]}{1 + [\text{유상증자비율}(17.62\%) \times \text{할인율}(25\%)]}$$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1년 08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25\%)]$$

$$\text{▶ 1차 발행가액} = \frac{\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25\%)]}{1 + [\text{유상증자비율}(17.62\%) \times \text{할인율}(25\%)]}$$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2011년 09월 29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text{▶ 2차 발행가액} =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25\%)]$$

④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②의 1차 발행가액과 ③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⑤ 발행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1년 08월 31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1년 09월 2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1년 09월 30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⑥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원: 총 발행예정주식의 10%에 해당하는 45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의 90%(4,05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구주주")에게 등재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1주당 0.1586149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원이 ① 항과 같이 우선배정 받은 물량 중 청약하지 아니한 물량을 기준

주주에게 등재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추가 배정하고, 이에 따라 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반공모:

인수계약서상의 용어의 정의
(1) 주주배정분: 4,500,000주 중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을 제외한 주식
(2) 일반공모 배정분: 우리사주조합원 및 구주주 청약 미달에 따른 잔여주식과 단수주의 합계
(3) 대표주관회사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일반공모 배정분 X 40%
(4) 인수회사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 ① 동부증권(주) : 일반공모 배정분 X 30% ②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일반공모 배정분 X 30%
(5) 개별 인수의무주식수 =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 일반공모로 모집하여 청약을 받은 본 주식 수 -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 수 다만,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는 0 이상으로 한다.

a)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방식)한다. .

b)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c)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각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모든 "청약초과회사"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이상으로 한다)을 합산한 주식수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 사이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의 비율대로 배분하여 산정하되, 각각 “청약미달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에서 “청약물량”을 차감한 주식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한다.

④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수 내에서배정합니다.

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설명하면, 상기 ① 목 내지 ④목의 통합배정은 청약기간 (우리사조 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일반청약자 청약) 중에 접수된 청약물량의 배정에 관한 원칙이며, 상기 ①목 내지 ④목의 통합배정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 청약 결과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II.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5,016,76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주)	30,033,531
	우선주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11년 10월 14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 (주)	0.5000000
	우선주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10월 28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1년 10월 31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8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2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2011년 10월 14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000000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상장 초일 증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2) 무상증자에 대하여 배정비율 및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완료후 기준입니다.
- 3) 신주의 재원은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입니다.
- 4) 본 무상증자 관련사항은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상기사항 이외의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